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12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63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.

제8조(시험관리요원)

제8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시험관리요원) ① 사장은 직원 채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 직원 외 감사부서의 감사인을 입회·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여 시험관리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.

제9조의2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

제9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 ① 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.

1. 피해자 특정 시

가. 면접단계 피해자는 차기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제

나.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

2. 피해자 특정 불가 시

가.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 실시

나.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 재실시

② 사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.

제56조의2(채용비리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공개)

제56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2(채용비리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공개) 사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8조(시험관리요원) ① 사장은 직원채용 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.</u> <신설>	제8조(시험관리요원) ① 사장은 직원 채용 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인사담당부서 직원 외 감사부서의 감사인을 입회·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여 시험관리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.</u> 제9조의2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 ① 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. 1. 피해자 특정 시 가. 면접단계 피해자는 차기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제 나.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2.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.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 실시 나.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 재실시 ② 사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. 제56조의2(채용비리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공개) 사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	
<신설>		